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30 선고 2021가단82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문호, 정태영, 최유진

변론 종결2022. 5. 19.

판결 선고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와 D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18. 5. 16.	2023. 4. 25.	30,000,000	2018. 5. 16.	30,000,000
2	2018. 5. 23.	2022. 5. 23.	20,000,000	2018. 5. 23.	20,000,000

나. 피고의 B에 대한 금전 대여와 근저당권설정 등

1) 한편 피고는 B에게 2017. 7. 7. 150,000,000원, 2017. 9. 6.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B가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9. 12. 17. B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38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20. 1. 21. B로부터 대여금 730,000,000원(신규 대여금 350,000,000원 +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 380,000,000원)을 2021. 2. 2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고, 같은 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5562호로 채권최고액 7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B에게 2020. 1. 22. 200,000,000원, 2020. 2. 5. 15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무렵의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3,690,000,000원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4,730,000,000원 정도이다.

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등

1) B는 2020. 7.경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고, 2020. 8.경부터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2) B가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30,739,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021. 4. 16. 기준 31,985,00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D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②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1. 21. 이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경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2020. 8.경부터 은행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는바,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후 B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B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3,690,000,000원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4,730,000,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변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자금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가) B는 김 가공식품 제조 등을 하였는데, 자금난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2020. 1. 22. 200,000,000원, 2020. 2. 5. 15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2020. 2. 14.부터 2020. 4. 14.까지 김, 건어물, 마른김 등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합계 414,817,100원을 지출하였다.

나) B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합계 424,058,056원을 지출하였고, 그 밖의 회사운영비로 179,575,725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B는 2020. 8. 25.경 피고에게 "2017년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최종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고, 회사는 조업 중단되었다. 회사를 잘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본인의 아파트를 추가 설정해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20. 1. 22.과 2020. 2. 5. 합계 3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위 350,000,000원 차용과 관련한 부분은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3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을 제외한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과 관련한 부분도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B의 위 기존 차용금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과 관련한 담보 설정이 사업의 계속 추진과 관계가 있다거나 신규자금 유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사해의사 인정 여부

-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2) 판단 피고는 B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라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내용만으로 B의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참조).
-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연수

별지